| 의안번호 | 제2361호 |
|---|---|
| 의 결<br>년 월 일 | 2025. . . |

| 의결사항 |
|---|
| |

#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

| 제 출 자 | 보 은 군 수 |
|---|---|
| 제출년월일 | 2025. 10. 28. |

| 기획감사실 심사필 | 박기병인 |
|---|---|

#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

| 의 안 번 호 | 제2361호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28.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(소관부서 : 재 무 과)

## 1. 제안이유

○ 마로면 기대리 (구)농산물판매장은 현재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과 임대 수요가 없는 유휴 상태

○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품 전시·판매장으로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자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| 재산의 표시 | | | 대부 용도 | 무상 대부기간 | 단체명 (운영법인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재지 | 구분 | 면적(㎡) | | | |
|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397-8 | 건물 | 183.12 |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| 2025. 11. ~ 2030. 10. [5년] | 결초보은 양봉연구회 (회장 안세준) |
| | 토지 | 847 | | | |

## 3. 근거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4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35조

○ 「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

## 4. 참고자료

○ 위치도(마로면 기대리 397-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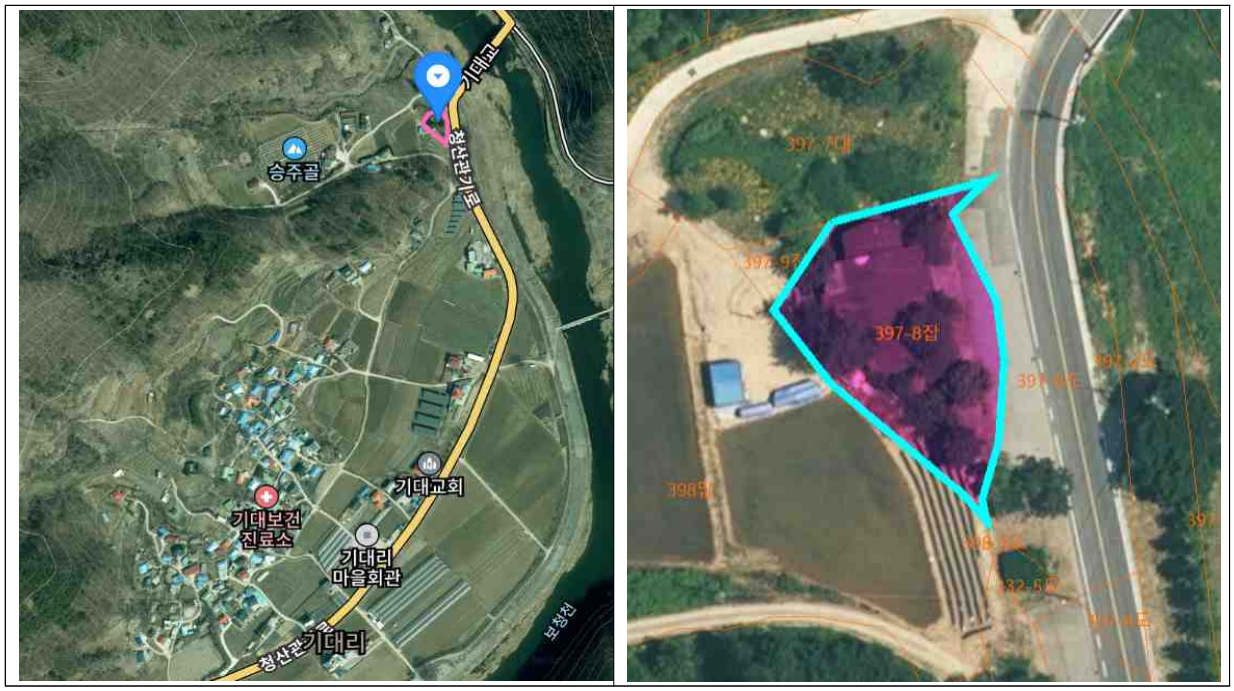


○ 사진(영업장, 사무실, 샤워실, 화장실 각 1개)

○ 공동상표 사용허가서

## 보은군 농·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승 인 번 호 | | 제25-0001-001호 | | |
| 사 용 권 자 | 성명(대표자) | 안 세 준 | 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 | 1958. 9. 30. |
| | 법인(작목반) | 결초보은 양봉연구회 | | |
| | 주 소 | 보은군 마로면 청산관기로1120-117 | 전 화 번 호 | 010-3132-7062 |
| 승 인 내 용 | 승 인 품 목 | 벌꿀 | | |
| | 승 인 물 량 | 3t | | |
| | 사 용 기 간 | 2025. 8. 22. ~ 2030. 8. 21. | | |

보은군 농·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.

2025년 8월 22일

보 은 군 수

【근거법령】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34조(대부료의 감면)**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**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12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**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**

**제35조(대부료의 감면)**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**

#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28조(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)**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**「보은군 농·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」에 따라 ‘공동상표’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·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**